

등 록 번 호
안내서-1533-01



국민의 더 건강한
내일을 위한 정부혁신



화장품의 점자 표시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

[민원인 안내서]

2026. 10.



식품의약품안전처
화 장 품 정 책 과

지침서·안내서 제·개정 점검표

명칭

화장품의 점자 표시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

아래에 해당하는 사항에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등록대상 여부	☐ 이미 등록된 지침서·안내서 중 동일·유사한 내용의 지침서·안내서가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 상기 질문에 '예'라고 답하신 경우 기존의 지침서·안내서의 개정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 지침서·안내서의 제정이 필요한 경우 그 사유를 아래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유 :)	
	☐ 법령(법·시행령·시행규칙) 또는 행정규칙(고시·훈령·예규)의 내용을 단순 편집 또는 나열한 것입니까?	☐ 예 ☒ 아니오
	☐ 단순한 사실을 대외적으로 알리는 공고의 내용입니까?	☐ 예 ☒ 아니오
	☐ 1년 이내 한시적 적용 또는 일회성 지시·명령에 해당하는 내용입니까?	☐ 예 ☒ 아니오
	☐ 외국 규정을 번역하거나 설명하는 내용입니까?	☐ 예 ☒ 아니오
	☐ 신규 직원 교육을 위해 법령 또는 행정규칙을 알기 쉽게 정리한 자료입니까?	☐ 예 ☒ 아니오
☞ 상기 사항 중 어느 하나라도 '예'에 해당되는 경우에 지침서·안내서 등록 대상이 아닙니다. 지침서·안내서 제·개정 절차를 적용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지침서·안내서 구분	☐ 내부적으로 행정사무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반복적으로 행정사무의 세부기준이나 절차를 제시하는 것입니까? (공무원용)	☐ 예(☞지침서) ☒ 아니오
	☐ 대내외적으로 법령 또는 고시·훈령·예규 등을 알기 쉽게 풀어서 설명하거나 특정한 사안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입장을 기술하는 것입니까? (민원인용)	☒ 예(☞안내서) ☐ 아니오
기타 확인 사항	☐ 상위 법령을 일탈하여 새로운 규제를 신설·강화하거나 민원인을 구속하는 내용이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 상기 질문에 '예'라고 답하신 경우 상위법령 일탈 내용을 삭제하시고 지침서·안내서 제·개정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사항에 대하여 확인하였음.		
2026년 10월 20일		
담당자 확 인(부서장)		김동욱 김지연

본 안내서는 화장품의 용기 또는 포장에 점자 또는 음성·수어영상 변환용 코드를 표시할 때 관련 영업자가 참고할 수 있는 사항을 알기 쉽게 설명하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입장을 기술한 것입니다.

본 안내서는 대외적으로 법적 효력을 가지는 것이 아니므로 본문의 기술방식(‘하여야 한다’ 등)에도 불구하고 참고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안내서는 2026년 10월 20일 현재의 과학적·기술적 사실 및 유효한 법규를 토대로 작성되었으므로 이후 최신 개정 법규 내용 및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민원인 안내서”란 민원인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법령 또는 행정규칙을 알기 쉽게 설명하거나 특정한 사안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입장을 기술하는 것임(식품의약품안전처 지침서등의 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

※ 본 안내서에 대한 의견이나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생약국 화장품정책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 043-719-3408

팩스번호: 043-719-3400

제·개정 이력

화장품의 점자 표시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

연번	제 · 개정번호	승인일자	주요내용
1	안내서-1533-01	2026.10.20.	제정

■ 목 차 ■

I. 일반사항	1
1. 목적	
2. 관련 규정	
3. 적용 대상 및 범위	
4. 용어의 정의	
II. 점자 표시	5
1. 점자의 기본 원칙	
2. 점자의 규격	
3. 점자 표시 방법	
4. 점자 표시 위치	
5. 점자로 표시하는 사항	
6. 검수	
III.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 표시	11
1.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의 기본 원칙	
2.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QR코드)의 규격	
3.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 표시 방법	
4.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 표시 위치	
5.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로 제공하는 사항	
6. 검수	
IV. 부록	15
1. 「점자법」	
2. 「한국 점자 규정」(점자 표기의 기본 원칙)	
3. 「한국수화언어법」	

1. 목적

- 이 가이드라인은 화장품책임판매업자 등 관련 영업자가 화장품의 용기·포장에 「화장품법」에 따른 기재사항을 점자 또는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로 병행하여 표시하려는 경우에 참고할 수 있는 사항을 안내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 이 가이드라인은 영업자가 화장품에 표준화된 점자 또는 음성·수어영상 변환용 코드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하여 시각 또는 청각 장애인의 화장품 안전사용을 도모하고, 제품 정보에 대한 알권리를 보장하는 등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관련 규정

- 「화장품법」 제10조(화장품의 기재사항)

「화장품법」

제10조(화장품의 기재사항) ① 1차 포장만으로 구성되는 화장품의 외부 포장과 1차 포장에 2차 포장을 추가한 화장품의 외부 포장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내용량이 소량인 화장품의 포장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포장에는 화장품의 명칭, 화장품책임판매업자 및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의 상호, 가격, 제조번호와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개봉 후 사용기간을 기재할 경우에는 제조연월일을 병행 표기하여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만을 기재·표시할 수 있다.

1. 화장품의 명칭
2. 영업자의 상호 및 주소
3. 해당 화장품 제조에 사용된 모든 성분(인체에 무해한 소량 함유 성분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성분은 제외한다)

4. 내용물의 용량 또는 중량
 5. 제조번호
 6.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
 7. 가격
 8. 기능성화장품의 경우 "기능성화장품"이라는 글자 또는 기능성화장품을 나타내는 도안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도안
 9.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10.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1차 포장에 2차 포장을 추가한 화장품의 1차 포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소비자가 화장품의 1차 포장을 제거하고 사용하는 고형비누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화장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화장품의 명칭
 2. 영업자의 상호
 3. 제조번호
 4.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
- ③ 제1항에 따른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화장품의 용기 또는 포장에 표시할 때 시각·청각 장애인을 위하여 점자 또는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 등의 표시를 병행할 수 있다.
-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3항에 따른 표시에 필요한 경우 화장품제조업자 등에게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점자법」 및 「한국 점자 규정」(문화체육관광부 고시)
- 「한국수화언어법」
- 「시각장애인의 인쇄물 접근성 향상을 위한 음성변환용 코드 활용지침」
 - * 국립전파연구원(<http://www.rra.go.kr>) > 알림소식 > 방송통신표준자료실

3. 적용 대상 및 범위

- 화장품의 모든 용기 또는 포장에는 「화장품법」 제10조에 따른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표시할 때, 점자 또는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를 병행하여 표시할 수 있다.
- 이 가이드라인은 화장품에 점자 또는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 표시를 적용하는 화장품책임판매업자, 화장품제조업자 및 용기·포장 제조업체, 점자 인쇄 업체,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 제작 업체 등이 활용할 수 있다.
- 화장품은 용기·포장의 재질·형태, 제조 공정 등이 다양하므로, 이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는 방법대로 점자 표시를 적용하기 어려운 때에는 식품, 의약품, 의료기기 등 유사한 사례를 참고할 수 있다.

4. 용어의 정의

- ‘점자’는 「점자법」 제3조제1호에 따라 시각장애인이 촉각을 활용하여 스스로 읽고 쓸 수 있도록 튀어나온 점을 일정한 방식으로 조합한 표기 문자를 말한다. 이 경우 도형·그림 등을 촉각으로 인지할 수 있도록 제작된 촉각자료를 포함한다.
- ‘수어’는 「한국수화언어법」 제3조제1호에 따라 대한민국 농문화 속에서 시각·동작 체계를 바탕으로 생겨난 고유한 형식의 언어인 한국수어를 말한다.
- ‘지문자’는 청각장애인과 의사소통을 할 때 손과 손가락으로 한글의 자음과 모음을 표현하는 문자를 말한다.
-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는 표시 정보를 음성 또는 수어영상으로 변환시켜 주는 전자적 표시를 말한다.
- ‘QR코드’는 텍스트, URL,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등 다양한 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 2차원 바코드의 일종으로 사각형 모양의 격자무늬로 구성된 코드를 말하며,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의 한 종류이다.

- ‘점역’이란 일반 문자(묵자), 표, 그림, 기호 등을 점자로 변환하는 행위 등을 말한다.
- ‘1차 포장’이란 「화장품법」 제2조제6호에 따라 화장품 제조 시 내용물과 직접 접촉하는 포장용기를 말한다.
- ‘2차 포장’이란 「화장품법」 제2조제7호에 따라 1차 포장을 수용하는 1개 또는 그 이상의 포장과 보호재 및 표시의 목적으로 한 포장(첨부분서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 ‘표시’란 「화장품법」 제2조제8호에 따라 화장품의 용기·포장에 기재하는 문자·숫자·도형 또는 그림 등을 말한다.

Ⅱ

점자 표시

1. 점자의 기본 원칙

가. 점자는 한 칸을 구성하는 점 6개(세로 3개, 가로 2개)를 조합하여 만드는 63가지의 점형*으로 이루어진다.

* 점형이란 점의 개수와 위치로 구별되는 점의 모양을 말한다.

나. 한 칸을 구성하는 각각의 점에는 번호가 매겨져 있으며, 점의 번호는 왼쪽 위에서 아래로 1점, 2점, 3점, 오른쪽 위에서 아래로 4점, 5점, 6점으로 한다.

1	● ●	4	← 상단
2	● ●	5	← 중단
3	● ●	6	← 하단

<점자의 모양 예시>

다. 점자는 「점자법」 제10조에 따른 「한국 점자 규정」에 적합하도록 적고, 한글 점자 이외의 점자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국제영어점자위원회가 정한 「통일영어점자 규정」에 따라 적을 수 있다.

2. 점자의 규격

가. 점자의 물리적 규격은 아래와 같다.

- 점 높이: 반구형 점의 중심점에서 밑면까지의 거리
- 점 지름: 반구형 점의 밑면 중심을 지나 점의 둘레와 만나는 직선거리
- 점간 거리: 점칸 내 한 점의 중심점에서 인접한 다른 점의 중심점까지의 거리
- 자간 거리: 수평으로 나열된 두 점칸에서 같은 점 번호에 해당하는 두 점의 중심점 사이의 거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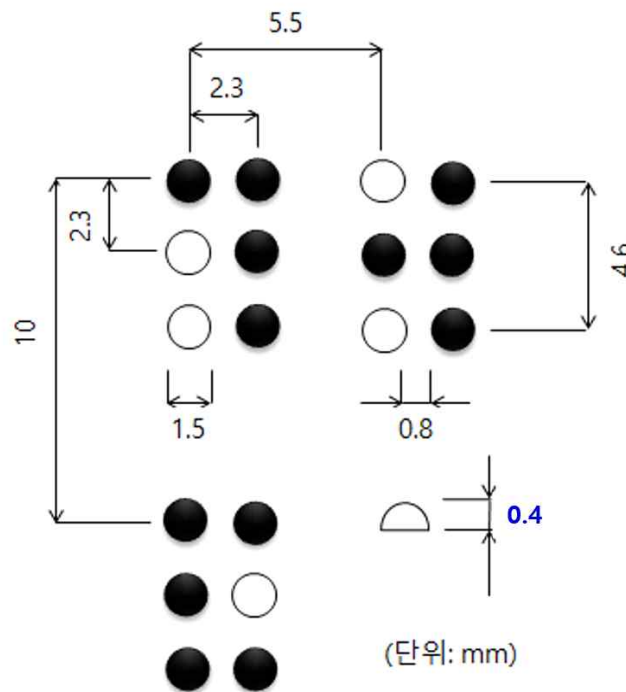
- 줄간 거리: 수직으로 나열된 두 점칸에서 같은 점 번호에 해당하는 두 점의 중심점 사이의 거리

나. 점자의 사용 규격은 다음과 같다.

(단위: mm)

점 높이	점 지름	점간 거리	자간 거리	줄간 거리
0.4 ~ 0.9	1.5 ~ 1.6	2.3 ~ 2.5	① 5.5 ~ 6.9 ② 5.5 ~ 7.3 ③ 5.5 ~ 7.6 ④ 위의 규격 준용	10.0 이상

※ ① 종아스티커, ② PVC, ③ 알루미늄 등 금속제, ④ 기타 재질은 ①~③의 규격을 준용



<점자의 사용 규격 예시>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화장품 용기·포장의 재질 등으로 인하여 점 높이를 규격대로 표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0.2mm 이상으로 표시할 수 있다.

다. 점자 표시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별도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한국 점자 규정」을 참고하여 표시할 수 있다.

3. 점자 표시 방법

가. 점자는 성형(형압·블로우·사출 등), 엠보싱, 스티커, 점자 태그 등 용기·포장의 특성에 적합한 방법을 선택하여 표시할 수 있다.

- 형압: 점자가 새겨진 금형에 포장재의 뒷면을 밀어서 앞면이 튀어나오도록 성형하는 방식으로, 뒷면이 오목하게 들어감
- 블로우: 점자가 새겨진 금형에 용융된 플라스틱이나 유리 등을 삽입 및 팽창시켜 성형하는 방식
- 사출: 점자가 새겨진 금형에 용융된 플라스틱이나 유리 등을 고압으로 사출하여 냉각시켜 성형하는 방식
- 엠보싱: 포장재의 앞면에 투명한 고체를 얹어 점자를 표시하는 방식으로, 뒷면에 영향을 주지 않음

나. 점자 표시 방법별 주로 적용되는 용기·포장의 유형은 다음 표와 같다.

점자 표시 방법	용기·포장의 유형
성형 (형압·블로우·사출 등)	종이 단상자, 종이 라벨, 플라스틱 병, 두꺼운 필름 파우치형(테두리 접합부) 등
엠보싱, 스티커	플라스틱 튜브형, 얇은 필름 파우치형, 필름 케이싱, 유리비닐류 등 * 소재·구조가 얇고 단단하지 않거나 표면이 고르지 않아 성형 등으로 점자 표시가 어려운 경우
점자 태그	플라스틱 원통형·펌프형·스프레이형 등 * 샴푸·린스 등 용기·포장의 모양이 유사하여 구별이 어려운 제품

※ 용기·포장의 재질·두께·성형방식과 내용물 특성 및 제조공정 등에 따라 표의 예시와 다른 표시 방법을 사용할 수 있음

다. 용기·포장의 재질별로 점자 표시 유의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종이류: 얇은 종이에 형압 인쇄 시 압력에 의해 찢어질 수 있으며, 보관 및 유통 중 점자가 눌릴 수 있다.
- 플라스틱 용기류: 내용물 특성(온도, 팽창 여부 등)에 따라 점자의 변형이 발생할 수 있다.

- 유리병 용기류: 점자가 작은 경우 성형 시 금형에 유리물이 완전히 채워지지 않아 불량 발생 가능, 보관 및 유통 중 점자가 깨질 수 있다.
- 스티커 또는 엠보싱점자: 보관 및 유통 중 스티커 또는 엠보싱점자가 떨어질 수 있다.

라. 점자 표시는 제품의 최소 판매단위별로 하고, 소비자가 구매할 때 직접 확인하는 외부 포장에 표시할 수 있도록 한다.

- 다만, 제품의 보호 및 묶음 포장을 위해 단상자 등으로 2차 포장하는 경우에는 점자 표시의 가독성이 떨어지지 않도록 유의한다.

마. 이 외에 점자의 가독성, 제품의 보관 및 유통 중 점자 표시의 유지, 용기·포장의 기능과 품질에 미치는 영향 및 제조공정의 적용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점자 표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Tip!

- 화장품의 용기·포장에 점자를 표시할 수 있는 인쇄기업 정보는 화장품안전성 평가지원추진단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음

* 화장품안전성평가지원추진단 cpsrcosmetic.or.kr > 정보광장 > 공지사항

4. 점자 표시 위치

가. 점자는 「화장품법」 제10조에 따른 화장품의 기재사항을 표시하는 위치에 병행하여 표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 다만, 용기·포장의 형태·재질, 제조공정 및 제품의 사용형태 등*에 따라 소비자가 식별하기 용이한 위치에 표시할 수 있다.

* (예시①) 화장품 용기·포장의 표시면의 폭이 좁은 경우

(예시②) 포장 등 제조공정을 수행하는 중 훼손이 우려되는 위치에 점자가 표시되는 경우

(예시③) 샴푸·린스 등 펌프형 제품

나. 용기·포장의 절개선, 접합면, 끝부분 등 점자가 훼손될 우려가 있는 위치를 피하여 점자를 표시(모서리로부터 4mm 이상 거리를 둘 것)하고, 일반 문자와 겹치지 않는 위치에 점자를 표시한다.

- 부득이한 사유로 일반 문자와 점자 표시가 겹치게 되는 경우에는 각각 식별이 가능한 범위에서 표시할 수 있고, 영업자는 일반 문자와 점자 표시가 겹치지 않도록 제품의 용기·포장 등을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 1차 포장과 2차 포장이 함께 있는 제품은 소비자가 구매 또는 사용 과정에서 접근이 용이한 포장 중 하나에 점자를 표시할 수 있고, 제품 특성과 사용기간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모든 포장에 표시할 수 있다.

5. 점자로 표시하는 사항

가. 화장품에 점자로 표시하는 사항은 화장품의 명칭을 우선으로 고려하고, 용기·포장의 면적이 좁아 모두 점자로 표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화장품의 식별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화장품의 명칭의 일부만 표시할 수 있다.

- 이 경우 화장품의 명칭의 일부를 생략하여도 화장품*의 구분이 가능하도록 점자로 표시하여야 한다.

* 샴푸, 바디워시 등 인체 사용부위가 다른 화장품은 그 구분이 가능하도록 표시

나. 화장품의 명칭 이외에도 “기능성화장품” 문구, 사용방법 등 시각장애인이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우선으로 고려하여 표시할 수 있다.

다. 시각 또는 청각장애인에게 화장품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점자와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를 병행 표시할 수 있다.

6. 검수

가. 점자가 「한국 점자 규정」에 따라 바르게 표시되도록 「점자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점자출판이 가능한 시설 또는 「점자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점역·교정사를 통해 점자 규격 준수 여부를 검수한 후 시판하는 것을 권장한다.

나. 점자를 표시하는데 용기·포장의 면적이 좁은 경우와 화장품의 제조·유통 과정 중 점자의 파손 및 변형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가독성이 보장될 수 있는 범위에서 점자출판이 가능한 시설 또는 점역·교정사의 확인을 거쳐 점 높이 및 간격 등을 점자의 규격과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



Tip!

- 점자를 자문·교정 등 검수할 수 있는 단체·기구 정보는 화장품안전성평가지원추진단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음
 - * 화장품안전성평가지원추진단 cpsrcosmetic.or.kr > 정보광장 > 공지사항
- 국립국어원에서는 점자 종합 정보 누리집과 점역프로그램 “점사랑”을 통해 점역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 * 국립국어원 점자 종합 정보 누리집(korean.go.kr/braille/common)

1.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의 기본 원칙

- 가.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는 이동통신단말장치(스마트폰)로 인식하여 음성 또는 수어영상이 출력되도록 제공한다.
- 나.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 표시와 관련하여 국립전파연구원의 「시각장애인의 인쇄물 접근성 향상을 위한 음성변환용 코드 활용지침」 및 「화장품 바코드 표시 및 관리요령」(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를 참고한다.
- 다. 수어영상 제작 시 관련 법령에 따른 수어*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고유명사(업체명 등)이거나 수어 단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문자로 표현할 수 있다. 지문자로 표현할 때는 청각장애인의 이해를 돕기 위해 텍스트 및 이미지 정보를 함께 제공한다.
- * 수어는 「한국수화언어법」 및 국립국어원에서 제공하고 있는 인터넷 「한국수어사전」(<https://sldict.korean.go.kr>)을 따른다.
- 라. 수어영상 제작 지침으로 국립장애인도서관의 「한국수어영상도서 제작지침」과 방송통신위원회의 「장애인방송 프로그램 제공 가이드라인」을 참고한다.

2.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QR코드)의 규격

- 가. QR코드의 모양은 정사각형으로 하고, 크기는 가로와 세로의 길이를 최대 18mm 이내로 하고 15mm를 권장한다.
- 용기·포장의 면적이 좁아 QR코드의 크기를 줄여야 하는 경우에는 가로와 세로 길이를 15mm보다 작게 줄일 수 있으나 인식률이 낮아지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 나. QR코드는 검은색, 바탕색은 흰색으로 적용하는 것을 권장한다.

다. QR코드의 인식율을 높이기 위해 QR코드의 해상도는 최소 300 DPI 이상으로 적용한다.

3.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 표시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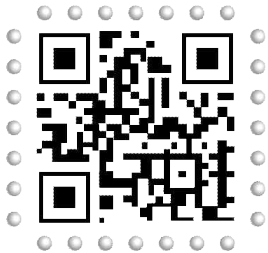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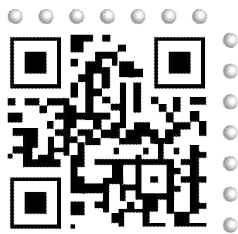
가.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는 지워지지 않는 잉크·각인 또는 소인 등을 사용하여 표시한다.

- 다만, 용기·포장의 특성상 잉크·각인 또는 소인 등이 어려운 경우에는 스티커, 라벨(Label) 또는 꼬리표(Tag)를 사용할 수 있으나, 떨어지지 않도록 부착한다.

※ 용기·포장 형태가 곡면이거나 수축필름 등을 사용하는 경우 QR코드 인식률이 낮아질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함

나.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는 시각장애인이 쉽게 위치를 찾을 수 있도록 코드의 테두리를 양각 또는 촉각 돌기로 표시한다.

다.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의 테두리 전체를 양각 또는 촉각돌기로 표시하는 것을 권장하나 용기·포장재 재질 및 구조의 특성상 어려운 경우 최소 연속하는 두 면에 양각 또는 촉각 돌기를 표시한다.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의 테두리 표시 방법	
 테두리 전체를 표시하는 방식	 테두리 중 연속하는 두 면을 표시하는 방식

라.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 테두리에는 “음성·수어정보 제공”이라는 문구를 기재할 수 있다.

4.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 표시 위치

- 가.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는 「화장품법」 제10조에 따른 화장품의 기재사항을 표시하는 위치에 병행하여 표시한다.
- 다만, 용기·포장의 크기, 디자인, 곡률, 재질, 인쇄방식 및 제품의 사용방법 등을 고려하여 시각 또는 청각 장애인이 쉽게 찾을 수 있는 위치에 표시할 수 있다.
- 나. 1차 포장과 2차 포장이 함께 있는 제품은 소비자가 구매 또는 사용 과정에서 접근이 용이한 포장 중 하나에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를 표시할 수 있고, 제품 특성과 사용기간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모든 포장에 표시할 수 있다.

5.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로 제공하는 사항

- 가.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를 통해 「화장품법」 제10조에 따른 화장품의 기재사항 전부 또는 일부를 제공할 수 있고, 화장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화장품의 명칭, 제품 유형, 사용방법 및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 나.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로 제공하는 정보는 화장품의 용기·포장에 표시된 기재사항과 일치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수어로 통역하기 어려운 경우(한자용어, 전문용어 등), 일부 내용을 생략하거나 청각장애인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바꿀 수 있다.
- 다.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에 시각 또는 청각 장애인이 원하는 정보를 선택할 수 있도록 목차와 항목 선택기능 등을 포함하여 제공할 수 있다.
- 라.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용기·포장에 유통용 바코드, 제품정보 코드 등을 별도로 표시한 경우에는 기존의 코드와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를 통합하여 표시할 수 있다.

6. 검수

가. 수어를 사용하는 청각장애인이 화장품에 관한 정보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수어 영상이 바르게 제작되었는지 여부를 수어통역사 등 전문가를 통해 정확성, 가시성 등 확인할 수 있다.



Tip!

- 국립국어원에서는 “한국수어 사전”을 통해 수어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 * 국립국어원 한국수어 사전(sldict.korean.go.kr)

1. 「점자법」

점자법

[시행 2025. 8. 14.] [법률 제21013호, 2025. 8. 14., 타법개정]

문화체육관광부(국어정책과) 044-203-2538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점자 및 점자문화의 발전과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여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권리를 신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 이념) 시각장애인은 문자 수단으로서 점자를 사용할 권리가 있으며, 국가와 국민은 점자의 발전과 보전·계승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점자”란 시각장애인이 촉각을 활용하여 스스로 읽고 쓸 수 있도록 튀어나온 점을 일정한 방식으로 조합한 표기문자를 말한다. 이 경우 도형·그림 등을 촉각으로 인지할 수 있도록 제작된 촉각자료를 포함한다.
2. “전자점자”란 점자정보단말기 등에서 활용 가능하도록 전자적으로 생성된 점자를 말한다.
3. “시각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시각장애인을 말한다.
4. “점역”이란 일반활자, 표, 그림, 기호 등을 점자로 변환하는 행위 등을 말한다.
5. “교정”이란 점역본과 원본을 대조하여 오기·왜곡·첨가·누락된 내용 또는 점자규정상의 오류를 바로잡는 행위 등을 말한다.
6. “점자규정”이란 한글 자모, 약자, 약어, 수학·과학·컴퓨터, 음악 등의 분야에서 사용하는 각종 기호, 외국어, 문장부호 표기 등 점자의 사용에 있어서 필요한 규정을 말한다.
7. “공공기관등”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제4조(점자의 효력 및 차별금지) ① 점자는 한글과 더불어 대한민국에서 사용되는 문자이며, 일반활자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

② 공공기관등은 입법·사법·행정·교육·사회문화적으로 점자의 사용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각장애인의 점자사용능력 향상과 점자의 발전 및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공공기관등은 시각장애인이 점자를 사용하여 모든 정보에 접근·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③ 삭제<2020. 12. 8.>
- ④ 공공기관등은 시각장애인이 점자를 사용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도록 점자사용에 방해가 되는 요소를 파악하고 이를 개선·보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신설 2021. 5. 18.>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점자의 사용과 보급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2장 점자발전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7조(점자발전기본계획의 수립)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점자의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점자 관련 전문가 등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점자발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점자정책의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에 관한 사항
 2. 점자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3. 시각장애인의 점자사용능력 증진과 점자 사용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4. 점자정책과 점자교육의 연계에 관한 사항
 5. 점자의 가치 홍보 및 점자문화유산의 보전에 관한 사항
 6. 점자의 보급 및 국제 교류에 관한 사항
 7. 점자정보화에 관한 사항
 8. 남북한 점자 통일 방안에 관한 사항
 9. 점자 관련 전문인력의 자격 부여 및 양성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점자의 발전과 보전에 필요한 사항

제8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세부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등과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중 관련 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9조(실태 조사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점자 관련 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시각장애인의 점자사용능력, 점자에 대한 인식, 점자 사용 환경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거나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료 수집이나 실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등에게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 등을 요구받은 공공기관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③ 그 밖에 실태 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점자규정 등의 제정 및 개정)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점자 관련 전문가 등의 심의를 거쳐 점자규정을 제정하고,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이를 개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점자 사용에 필요한 세부 지침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도 제1항을 준용한다.

제3장 점자사용의 촉진 및 보급

제11조(점자교육의 기반조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교육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점자를 배우려는 사람들을 위하여 교육과정과 교재를 개발·보급하고 점자교원을 양성하는 등 점자교육 기반조성에 필요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개정 2022. 9. 27., 2024. 2. 27.>

② 교육부장관은 시각장애인 학생이 점자를 사용하여 모든 정보에 접근·활용할 수 있도록 점자사용능력 증진을 위한 교육을 지원하여야 한다.<신설 2022. 9. 27.>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점자의 사용 촉진 및 보급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점자 관련 법인·단체 중 제1항에 따른 점자교원 또는 제12조제2항에 따른 점역·교정사를 갖추고 점자출판이 가능한 시설을 점자교육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신설 2022. 9. 27., 2024. 2. 27.>

④ 국가는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점자교육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24. 2. 27.>

⑤ 제1항에 따른 점자교원의 자격요건 등에 관한 사항 및 제3항에 따른 점자교육원의 지정요건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2024. 2. 27.>

제11조의2(점자 능력의 검정)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점자 능력의 향상·평가를 위하여 점자 능력을 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점자 능력의 검정 방법·절차·내용 및 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4. 2. 27.]

제12조(점자의 보급 및 지원 등) ① 교육부장관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의 시각장애인 학생 및 교원이 사용하는 교과용 도서에 대하여는 점자로 제작·보급하여야 한다.<개정 2017. 12. 12., 2025. 8. 14.>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고 점자출판이 가능한 시설에 대하여 점자출판물의 제작·보급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점역·교정사
2. 점자제판기 또는 점자인쇄기
3. 점자물제본기
4. 그 밖에 점자출판에 필요한 설비 및 소프트웨어

③ 제2항에 따른 시설의 구체적인 기준, 지원규모, 지원대상 등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의2(공공기관등의 점자 문서 제공 등) ① 공공기관등은 시각장애인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일반활자 문서를 동일한 내용의 점자(전자점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문서로 제공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등은 제1항에 따른 연간 점자 문서 요구 현황 및 그 제공 실적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다음해 1월 31일까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 12. 8.]

제13조(교과용 도서 및 공문서 등의 점자규정 준수) 교과용 도서와 공공기관등의 공문서, 기타 출판물을 점자로 제작할 때에는 점자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4조(점자문화의 확산)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올바른 점자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신문·방송·잡지·인터넷 또는 전광판 등을 활용한 홍보와 교육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신문·방송·잡지·인터넷 등의 대중매체는 국민들의 점자에 대한 인식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한글 점자의 날) ① 시각장애인의 점자사용 권리를 신장하고 점자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매년 11월 4일을 한글 점자의 날로 정하고, 한글 점자의 날이 속한 주간을 한글 점자 주간으로 정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한글 점자의 날 기념 행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16조(민간단체 등의 활동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점자의 발전과 보급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7조(점자정보화의 촉진)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점자를 통하여 지식과 정보를 생산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점자정보화를 위한 각종 사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시각장애인이 점자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점자의 사용·점역·교정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기기, 서비스 등의 개발 및 보급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18조(점자 관련 전문인력의 자격 부여 등) ① 공공기관등은 점자 관련 전문인력에게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격의 종류, 자격 요건 및 자격 부여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보칙

제19조(협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점자의 사용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경우에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20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관련 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부칙 <법률 제21013호, 2025. 8. 14.> (초·중등교육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점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전단 중 “도서(디지털교과서 등 전자저작물을 포함한다)”를 “도서”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한다.

제4조 생략

2. 「한국 점자 규정」(점자 표기의 기본 원칙)

한국 점자 표기의 기본 원칙

제1항 한국 점자는 한 칸을 구성하는 점 여섯 개(세로 3개, 가로 2개)를 조합하여 만드는 예순세 가지의 점형으로 적는다.

제2항 한 칸을 구성하는 점의 번호는 왼쪽 위에서 아래로 1점, 2점, 3점, 오른쪽 위에서 아래로 4점, 5점, 6점으로 한다.

제3항 한국 점자는 풀어쓰기 방식으로 적는다.

제4항 글자나 기호를 이중으로 적지 않도록 이 규정에서 정한 한국 점자를 표준 점자로 정한다.

제5항 한국 점자는 변화하는 문자 환경에 대응하여 정확하면서도 간편하게 적도록 정한다.

제6항 한국 점자의 수학, 과학, 한국 음악 점자는 한글 점자 규정을 우선 고려하여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정한다.

제7항 한글 점자 이외의 점자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국제영어점자위원회가 정한 「통일영어점자 규정」(이하 ‘「통일영어점자 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8항 한국 점자의 물리적 규격은 아래와 같다.

1. 점 높이: 반구형 점의 중심점에서 밑면까지의 거리
2. 점 지름: 반구형 점의 밑면 중심을 지나 점의 둘레와 만나는 직선 거리
3. 점간 거리: 점칸 내 한 점의 중심점에서 인접한 다른 점의 중심점까지의 거리
4. 자간 거리: 수평으로 나열된 두 점칸에서 같은 점 번호에 해당하는 두 점의 중심점 사이의 거리
5. 줄간 거리: 수직으로 나열된 두 점칸에서 같은 점 번호에 해당하는 두 점의 중심점 사이의 거리
6. 한국 점자 사용 규격은 다음과 같다. 다만, 점자의 물리적 규격에 대하여 대상별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점 높이: 최솟값 0.4mm 최댓값 0.9mm

나. 점 지름: 최솟값 1.5mm 최댓값 1.6mm

다. 점간 거리: 최솟값 2.3mm 최댓값 2.5mm

라. 자간 거리

종이, 스티커: 최솟값 5.5mm 최댓값 6.9m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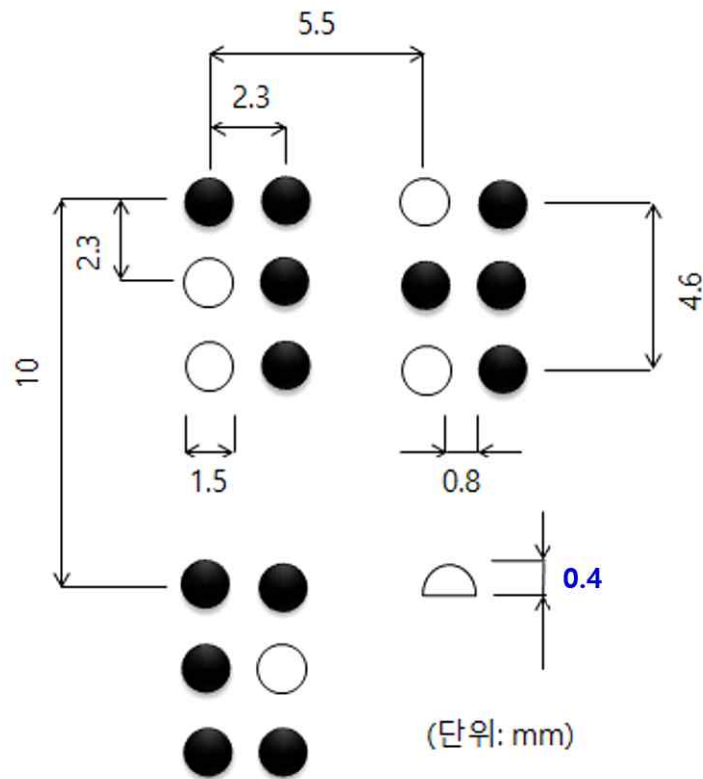
피브이시(PVC): 최솟값 5.5mm 최댓값 7.3mm

알루미늄, 스테인리스: 최솟값 5.5mm 최댓값 7.6mm

기타 재질: 위의 규격을 준용하여 사용

마. 줄간 거리: 최솟값 10.0mm 최댓값 정하지 않음

바. 점자 규격 그림(예시)



※ 「한국 점자 규정」(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law.go.kr>) > 행정규칙 > '한국 점자 규정'을 검색하여 열람 가능

3. 「한국수화언어법」

한국수화언어법

[시행 2026. 5. 12.] [법률 제21096호, 2025. 11. 11.,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국어정책과) 044-203-2538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수화언어가 국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농인의 고유한 언어임을 밝히고, 한국수화언어의 발전 및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여 농인과 한국수화언어사용자의 언어권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① 한국수화언어(이하 “한국수어”라 한다)는 대한민국 농인의 공용어이다.

② 국가와 국민은 한국수어를 사용하는 농인이 농정체성을 확립하고 한국수어와 농문화를 계승·발전할 수 있도록 협력한다.

③ 농인과 한국수어사용자(이하 “농인등”이라 한다)는 한국수어 사용을 이유로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생활영역(이하 “모든 생활영역”이라 한다)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며, 모든 생활영역에서 한국수어를 통하여 삶을 영위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④ 농인등은 한국수어로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국수어”란 대한민국 농문화 속에서 시각·동작 체계를 바탕으로 생겨난 고유한 형식의 언어를 말한다.
2. “농인”이란 청각장애를 가진 사람으로서 농문화 속에서 한국수어를 일상어로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3. “한국수어사용자”란 농인 외에 청각장애 또는 언어장애로 인하여 한국수어를 일상어로 사용하거나 보조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농문화”란 농인으로서의 농정체성과 가치관을 기반으로 하는 생활양식의 총칭을 말한다.
5. “농정체성”이란 농인으로서 가지는 자기동일성을 말한다.
6. “수어통역”이란 한국수어를 국어로 변환하거나 국어를 한국수어로 변환하는 것을 말한다.
7. “공공기관등”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국수어를 교육·보급하고 홍보하는 등 농인등의 한국수어 사용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인의 농정체성 확립과 농문화 육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책을 수립·시행할 때 농인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신설 2022. 1. 18.>
-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을 해석·적용할 때에는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의 내용과 취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2. 1. 18., 2023. 8. 8.>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한국수어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국수어의 발전 및 보전을 위한 한국수어발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한국수어 관련 전문가들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한국수어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에 관한 사항
2. 모든 생활영역에서 농인의 한국수어 사용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한국수어의 연구 및 전문용어 표준화에 관한 사항
4. 한국수어의 교육에 관한 사항
5. 한국수어의 보급에 관한 사항
6. 한국수어 통역에 관한 사항
7. 한국수어 관련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8. 농인의 농정체성 확립과 농문화 육성에 관한 사항
9. 한국수어의 정보화에 관한 사항
10. 남북한 한국수어의 교류 및 연구에 관한 사항
11. 한국수어의 발전을 위한 민간 부분의 활동 촉진에 관한 사항
12. 한국수어 관련 법령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한국수어의 발전에 필요한 사항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확정된 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공기관 등에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을 요구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⑥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한국수어발전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 및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③ 시행계획의 수립·시행과 추진실적의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보고) 정부는 기본계획,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을 확정 후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실태조사)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국수어 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3년마다 농인의 한국수어 사용 환경 등에 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 등에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 등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한국수어의 사용 환경 등에 관한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한국수어의 발전 및 보급

제10조(한국수어의 연구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국수어의 보전 및 발전을 위하여 한국수어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농인들이 각 분야의 전문용어를 쉽고 편리하게 사용하도록 전문용어를 한국수어로 표준화하는 연구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을 지정하거나 연구소·대학 또는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계 전문기관에 연구를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한국수어의 교육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인들의 한국수어 및 한국어 능력을 신장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인들에 대한 교육과 관련하여 장애 발생 초기부터 한국수어를 습득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23. 8. 8.>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학교로 하여금 한국수어를 한국어와 동등한 교수·학습 언어로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학교 교육에서 한국수어를 사용한 교육 및 한국수어를 통한 학습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12조(농인들의 가족에 대한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인들의 가족을 위한 한국수어 교육, 상담 및 관련 서비스 등 지원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각장애가 있는 아동의 부모 등이 한국수어를 원활히 사용할

수 있도록 한국수어 교육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3조(한국수어의 정보화) ① 국가는 한국수어의 정보화를 통하여 지식과 정보를 생산·활용할 수 있도록 각종 사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원격정보통신서비스망 등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누구나 한국수어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4조(한국수어의 사용촉진 및 보급)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공 대중매체를 활용하여 국민들에게 한국수어를 홍보하는 등 한국수어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고 한국수어 사용을 촉진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국수어를 배우려는 국민을 위하여 교육과정과 교재를 개발하고 한국수어교원을 양성하는 등 한국수어의 보급에 필요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국수어 사용촉진 및 보급을 위하여 공공기관 및 한국수어 관련 법인·단체를 한국수어교육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④ 국가는 제3항에 따라 지정된 한국수어교육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른 한국수어교원의 자격요건 등에 관한 사항 및 제3항에 따른 한국수어교육원의 지정요건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한국수어 능력의 검정)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국수어능력의 향상·평가를 위하여 한국수어능력을 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한국수어능력의 검정 방법·절차·내용 및 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수어통역)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어통역이 필요한 농인들에게 수어통역을 지원하여야 한다.<개정 2023. 8. 8.>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행사, 사법·행정 등의 절차, 공공시설 이용, 공영방송,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어통역을 지원하여야 한다.<개정 2023. 8. 8.>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비상사태 등 국가적 주요 사항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정책 등을 발표하는 경우 발표 현장에 수어통역사를 배치하는 등 수어통역을 반드시 지원하여야 하며, 발표 내용을 농인들이 알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수어통역 영상을 공표하여야 한다.<신설 2022. 1. 18., 2025. 11. 11.>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인들이 구직, 직업훈련, 근로 등 직업 활동 전반에 불이익이 없도록 수어통역을 지원하여야 한다.<개정 2022. 1. 18.>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어통역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2. 1. 18.>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중 수어통역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2. 1. 18.>

제17조(한국수어의 날) ① 농인들의 한국수어 사용 권리를 신장하고 한국수어에 대한 국민

의 인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매년 2월 3일을 한국수어의 날로 하며, 한국수어의 날이 속한 주간을 한국수어 주간으로 정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한국수어의 날 기념 행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0. 12. 22.]

제18조(민간단체 등의 활동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국수어의 발전과 보급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장 보칙

제19조(협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한국수어의 사용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20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부칙 <법률 제21096호, 2025. 11. 1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